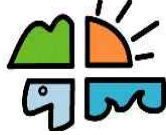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731호 2012년 11월 7일(수)

조 례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증축 완화(안 제53조제2항)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건폐율이 낮아 토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투자 환경 조성 등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용적률 활용을 통한 증축이 어려워 충분한 바닥면적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50퍼센트 까지 건폐율 완화하여 기업유치 여건 조성.

나.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3항)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 상한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하고 국가품격 제고에 이바지.

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관련 시설 건축시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4항)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하여 농수산업 육성 도모.

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안 제53조제5항)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보다 건폐율이 낮아 세부시설도입 및 투자유치에 제한을 받고 있어 토지활용도 제고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마.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용(안 제58조의2 신설)

기존 건축물이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에도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대수선을 허용함으로써 건축물의 미관 및 안전을 제고하며, 사용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별표1”부터 “별표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사업 활성화 도모.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도시계획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담당

(전화: 033-639-2764, FAX: 033-639-2314, Eail:kgw747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계획담당자 김규완(전화:033-639-24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의 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되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②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속초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8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의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 트 이하로 한다. ① <신설> ② <신설>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제53조(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 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 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로 모퉁 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 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 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 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 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 에 접한 대지 ②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계획관리 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 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제58조에 따른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 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

<u><신설></u>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속초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영 제93조제2항의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 시설 및 옥외 확장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 장치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이고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관련)

4층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별표 3 제13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3. 별표3 제13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6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3 제13호의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7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의 업무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의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4.6미터의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3호의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7세대를 초과하는 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의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의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3 제1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같은 호 라 목의 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2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의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의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3 파호 (1)부터(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의 업무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의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의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만 해당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3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으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한다), 교육원(농·임업·축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업·축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1차산업생산물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_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
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 지역으로 이전하
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9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 각 호에 충족 되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20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2002년 12월 31 이전에 준공된 공장
 -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별표 15차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으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_중 같은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관할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3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 각 호에 충족되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고 3층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20 제2호 카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2002년 12월 31 이전에 준공된 공장
 -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영 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 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 구역을 제외한다)
-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